

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2, 제7조의 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외교문서공개심의회)

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, 위원은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·대변인·차관보·의전장·기획조정실장·다자외교조정관·경제외교조정관·공공외교대사·**재외동포영사실장** 및 외교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1명으로 한다.

제7조(예비심사위원)

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5명 이상 **10명** 이하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외교문서공개심의회)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, 위원은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·대변인·차관보·의전장·기획조정실장·다자외교조정관·경제외교조정관·공공외교대사·<u>재외동포영사대사</u> 및 외교부 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1명으로 한다. 제7조(예비심사위원)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5명 이상 <u>7명</u> 이하로 한다.	제5조(외교문서공개심의회)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, 위원은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·대변인·차관보·의전장·기획조정실장·다자외교조정관·경제외교조정관·공공외교대사·<u>재외동포영사실장</u> 및 외교부 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1명으로 한다. 제7조(예비심사위원)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5명 이상 <u>10명</u> 이하로 한다.